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0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김기웅 · 엄태영 · 박형수

유용원 · 강선영 · 김대식

곽규택·조은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배달, 순찰, 청소,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외이동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음.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'23.4월)됨에 따라 보도를 포함하는 '보행자길'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행보조용 기구들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'보행자'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

또한,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앞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('24.7. 1) 이후 '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'등 새로운 유형의 보행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, 특별시장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

한편, 고령자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읍 • 면지역 마을통과

도로는 보행공간이 없는 곳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실정임.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 등 관할 도로에서 '마을주민 보호구간'을 지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보 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- 가. '보행자'의 범위에 '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' 추가, '보행자길'에 보행자 외 '실외이동로봇'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(제2조제1호 개정) 최근 상용화된 실외이동로봇의 활성화 전망에 따라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나.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(제15조제3항 개정)
- 다. 지자체 장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권한 신설(안 제17조의4 신설)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·면지역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장에게 관할 일반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권한 부여

법률 제 호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의자차를"을 "의자차와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"로, "같다)의"를 "같다)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의3에서 정하는 실외이동로봇"으로 한다.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별시장등은 관할지역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구조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5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4(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지정 등) ① 특별시장등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마을 통과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

- 2. 도로의 횡단 등 보행 통행량이 많은 구간
- 3. 주민들이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
- 4. 그 밖에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
-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.
- 1. 보도 및 횡단보도
- 2. 차량 속도 저감시설
- 3. 그 밖에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-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는 미리 관할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보행자길"이란 보행자(유모 1. ------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 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. ----- 의자차와 노약자용 이하 같다)의 통행을 위한 장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 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는 사람을 --- 같다)와 「도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의3에 서 정하는 실외이동로봇 ---. 가. ~ 아. (생 략)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2. •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제1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 제1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 설의 설치) ① · ② (생 략) 설의 설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 유)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 동부령으로 정한다. <단서 신 ----. 다만, 특별 설> <후단 신설> 시장등은 관할지역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의 구조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

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

<신 설>

쳐야 한다.

제17조의4(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지정 등) ① 특별시장등은 마을 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 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제1 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마을 통과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.

- 1.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 생하는 구간
- 2. 도로의 횡단 등 보행 통행량이 많은 구간
- 3. 주민들이 지정을 요청하는구간
- 4. 그 밖에 마을주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구간
-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

할 수 있다.

- 1. 보도 및 횡단보도
- 2. 차량 속도 저감시설
- 3. 그 밖에 마을주민의 교통안 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 교통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
-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는 미리 관할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.